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2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」 제40조의2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여 존치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(안 제40조의2)

⇒ “2020년 6월 30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함.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

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 결과 :

적합[기획예산과-1918(2020.2.13.)]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2. 6. ~ 2. 26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기획예산과의 2020년 제5회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결과 : 원안의결(2020.3.24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2 중 “2020년 6월 30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제4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 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<u>202</u> <u>0년 6월 30일</u> 까지로 하되, 구청장 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 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4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<u>202</u> <u>4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## 3. 미첨부 사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 연장하고자 함이므로, 그 의안의 시행에 비용발생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.

## 4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조성원 (☎ 3153-8922)